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 분야 확대 (안 제2조의4 제3항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「해저광물자원개발법」 개정('25.5월)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분야를 기존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에서 해양환경, 지질, 재난 안전분야까지 확대

※ 근거법령 : 해저광물자원개발법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 분야에 '해양 환경, 지질, 재난안전'을 추가하여 법상 심의위원회와 시행령상 실무위원 위촉 분야 일치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 분야 통일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원상회복 이행 기간 확대 (안 제11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현행은 관련 법령상 인허가 소요기간 및 사업별 특성(심해/천해 등)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'1년'을 원상회복기간으로 규정

※ 근거법령 : 해저광물자원개발법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해저구조물 위치·규모, 관련 법령상 인허가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년으로 확대

* 해상구조물의 현실적 원상복구 소요기간에 대한 용역 결과, 약 4.5년 소요 예상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수범자들이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간을 제시하여 구조적 위법 제거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